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79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20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7. 23.

다. 회 부 일 : 2025.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 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220호 신설).

II. 검토의견

1.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근거 신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 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2023.10.24. 제정)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법 제7조³⁾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항시설 건설, 공항

3)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
2.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및 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건설 관련사업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업무를 수행함.

다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⁴⁾는 국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국유재산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에 따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그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가덕도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 마.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란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4)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첫째,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원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 공항으로 기능하여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공익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둘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은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 방식으로 정부 출연을 규정⁵⁾하고 있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⁶⁾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⁷⁾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5)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6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2. 제7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25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
4. 제28조에 따른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보도자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 2024.7.12.

7)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9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신공항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공항건설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기본계획 및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신공항건설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신공항건설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시설(공항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지원) 국가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이 국유 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지원에 더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는 국유재산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체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으로 한정하고, 요건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및 조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⁸⁾을 감안하여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⁹⁾.

8)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9)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특례는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특례 신설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은 자금의 조달에 관한 규정만 있고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이 없어 보충성이 인정되는 등 특례신설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나, 존속기한 설정 원칙에 비추어 존속기한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 신설 >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20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4. 12. 31.

문의처

02)6788-5150